

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713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10. 16.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읍면 사무인력의 조정 및 주민자치센터 설립등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에 따라 한시기구·정원이 승인됨으로 한시정원에 대하여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한시정원(안 부칙 제2항)
  - 한시정원의 기한 : 2002. 12. 31.

## 3. 참고사항

- 설치근거
  -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본청 한시기구·정원승인 「경남도 행정12200-11117(2001. 7. 6)」
  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

## 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한시정원) 집행기관의 정원중 1명은 2002.12.31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2003.1.1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한다.